데이터3법 현황과 주요이슈

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상천

데이터3법이란?

데이터를 다루는 3가지 법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정보통신망법)」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 : 신용정보법)」

왜?

4차 산업혁명

AI, 클라우드, IoT - 데이터 데이터 이용 규제 혁신, 개인정보 보호 협치 체계 정비

개정안

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합의 결과('18.2/'18.4) + - 가명정보 정의 및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

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권고

-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등

개정경과

2020. 1. 9. 국회 본회의 통과

2020. 8. 5. 시행

데이터3법 개정안 주요내용

-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
- 관련 법률의 유사·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
-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
- 모호한 '개인정보' 판단 기준의 명확화

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목적

- ㅇ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
- ㅇ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

개인정보 등 개념의 변경

- ㅇ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
-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
- 시간·비용·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익명정보)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
- o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
-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
-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
-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 도록 함

구 개인정보법

제2조 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 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식별가능성 판단기준

- 1. 객관설 개인정보처리자 개개의 사정에 좌우되지 않음
- 2. 주관설 개인정보처리자 기준
- 3. 절충설 개별적, 구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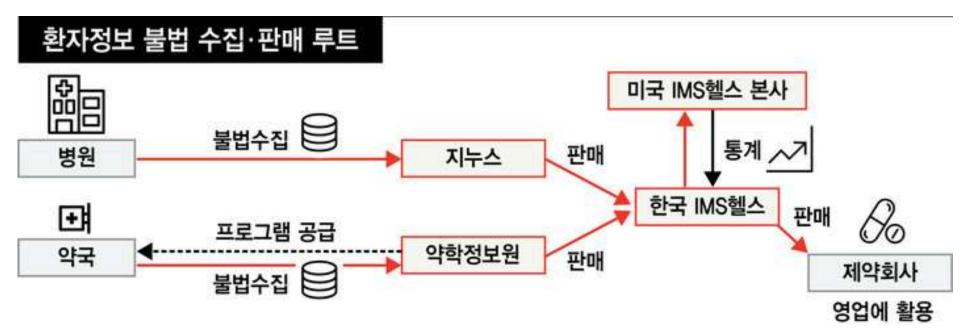
식별가능성 판단기준(판례)

1. IMEI, USIM(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2. 23. 선고 2010고단 5343 판결)

"당해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가 모두 동일인에게 보유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하지는 아니하고, 여기서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 지와는 상관 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 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"

식별가능성 관련 사례

2. IMS헬스 사건



출처) 2016. 7. 18.자 한겨레 신문 기사 "미 빅데이터 기업에 흘러간 한국 4300만명의 처방전"

식별가능성 관련 사례

2. IMS헬스 사건

- 약학정보원은 자동 전송 기능이 포함된 PM20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1. 1.말경부터 전국 약 1만 8,000여개의 약국에서 약 43억건에 이르는 환자들의 처방정보 및 의료진의 정보를 수집
- 약학정보원은 수집한 정보를 미국계 통계회사인 IMS헬스에 약 16억 원을 받고 판매
- IMS헬스는 정보를 통계화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약 70억원을 받고 판매



모노사됴

2015. 7. 23. (목)

주책임자: 합수단장 이정수

자료문의 :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

전화번호: 02-530-4285

제 목

환자 진료·처방정보 불법 수집·판매 사범 기소

- 병원·약국 프로그램 통한 불법 수집경로 차단 -

I

사건개요

○ 『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시단』(단장 이정수)은 병원·약국에서 환자 진료정보· 처방정보를 불법 수집·판매하는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금일 총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하였음

식별가능성 판단기준(판례)

2. IMS헬스 사건

- ①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13자리의 주민번호 중 홀수 및 짝수 자리 숫자를 각각 정해진 규칙에 따라 <mark>영어 알파벳으로 치환</mark>한 다음 양끝 2자리에 임의의 알파벳으로 잡음(noise)을 추가
- ② 201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는 주민번호가 해시 알고리즘인 SHA-512를 통해 일방향 암호화되어 제공
- ③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주민번호 대신 성명, 생년월일, 성별로 환자를 특정한 후 이것이 일방향 암호화되어 제공

식별가능성 판단기준(판례)

2. IMS헬스 사건 2심(민사) - 원고 패소

개인정보 해당, 비식별화 조치 미흡 손해 발생사실 인정 안됨

- 3. 형사사건
 - 2019. 11. 22. 징역 3년 등 구형
 - 2020. 2. 14. 대부분 무죄
 - : 개인정보 제공 고의 불인정

식별가능성 판단기준(판례)

2. IMS헬스 사건 민사 2심

"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암호화 등 적절한 비식별화(de-identification) 조치를 취 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이는 식별성을 요건으로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"

식별가능성 판단기준(판례)

2. IMS헬스 사건 형사 1심

"객관적으로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<mark>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</mark>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결합시킬다른 정보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면, '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'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"

식별가능성 판단기준(판례)

3. 수원지방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노7275 판결, 확정 "어느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정보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,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, 정보를 받는 사람의 이용목적 및 방법, 그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, 정보의 결합을 통해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"

개정법

제2조(정의)

- 1. "개인정보"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-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-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 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)
- 제58조의2(적용제외)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 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개정법 식별가능성

1. 판단 방법 - 합리적

- 고려요소 :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(타 정보 입수 가능성)

2. 판단 주체 - ?

개인정보 이용 범위 확대

- ㅇ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
-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
-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허용
-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
- ㅇ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
-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 보의 추가적인 이용·제공 허용

구법상 목적 외 이용·제공

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②

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
-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개정법상 가명정보의 처리

제28조의2(가명정보의 처리 등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.

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8. "과학적 연구"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, 기초연구, 응용연구 및 민 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.

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8. "과학적 연구"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, 기초연구, 응용연구 및 민 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.

이용・제공 범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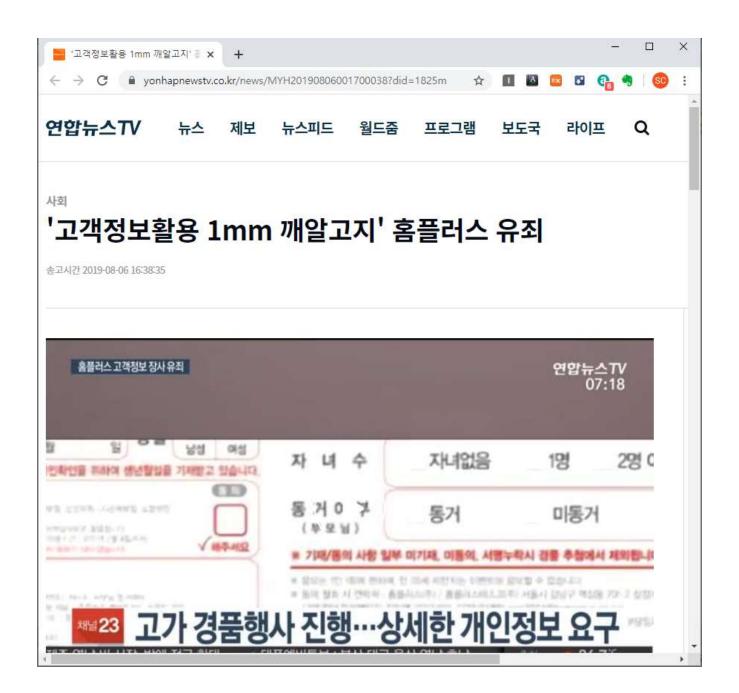
제17조
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,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

기준 - 개인정보 주체의 의사(?)

상업적 목적 사용에 대한 동의의 문제





[행사기간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[발표일 7월 7일]

계산대 앞에 위치한 응모함 에서 참여하시거나, www.homeplusevent.co.kr 접속하여 참여하세요!

Home plus



THE PERSONNEL COMMEN

상당스위험에어본 (10000위험의 신명

arma webb

흥물러스 5만원 상충권 (200명)

성전의 자신이 화면쓰고는

20X 8 x 0000

計画がある。計画はおりのは、またいできるである。
 は、なるできるである。

YOMEVAPINETY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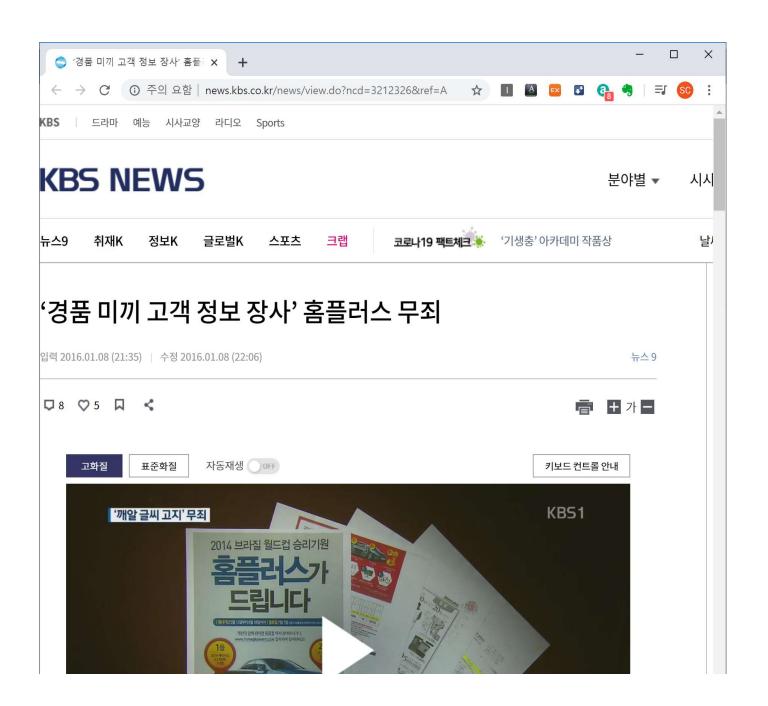
집중 당첨시 속다른 번호로 연락되었나 원화하게 거부하시아 합니다.

∴ 자녀없음 ∴ 1명 □ 2명이상



2011. 12. ~ 2014. 7.경 11회의 '경품이벤트 행사' 빌미로 712만건의 동의받고 취득 1건당 1,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

2011. 12. ~ 2014. 8.경 약 765만건(고객특정 약 190만건) , 약 929만건(고객특정 약 253만건)을 보험사에 제공하고 사후동의 받아 1건당 2,800원씩 총 83억 5천만원에 판매



मुख्य देशानुसूत्री केश निका जारा "我从母是可是从不想理。此可以是对那?" THE SHAPE WE ARE A SHAPE WE ARE A SHAPE WHEN THE SHAPE WE AS A SHAPE WE AS A SHAPE WHEN THE SHAPE WE AS A SHAPE WHEN TH The state of the s SET A No other winds and words and the second states of the second states and the second states are second states Market and the same and the sam The state of the s

형사

회사 벌금 7천5백만원, 도OO 전 대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(2019. 8. 6. 대법원 확정)

민사

약 520명에게 8365만원 지급(위자료 각 5만원~20만원 등)

개인정보 관련 법체계 정비

- ㅇ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
- '개인정보보호위원회'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 상
-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 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업 조사·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 관해 감독기구 일원화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 「정보통신망법」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으로 일원화

정보통신망법 개정안

정보통신망법 개정안

개정 목적

o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·중복조항 정비와 협치(거버넌스) 개선

정보통신망법 개정안

주요 내용

- o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으로 이관
-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'개인정보보호위원회'로 변경
-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으로 이관
-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'개인정보보호위원회'로 변경

개정 목적

- o 빅데이터 분석·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
- ㅇ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호 를 위한 규제 혁신
- ㅇ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
- ㅇ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
-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,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(Right to data portability), 자동화평가(Profiling)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

가명정보 도입

- 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
- '가명정보'는 통계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, 연구(산업적 목적 포함),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가능
-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,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
-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

	개념	활용가능 범위	
개인정보	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,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	사전적 이고 구체적인 통의를 받은 범위 內 활용 가능	
가명정보	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	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(EU GDPR 반영) ① 통계작성 (상업적 목적 포함) ② 연구 (산업적 연구 포함)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	
익명정보	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(복원 불가능할 정도로) 조치한 정보	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	

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변화

- 신용조회업(CB:Credit Bureau)업을 개인CB, 개인사업자CB, 기업 CB 등으로 구분 및 진입규제 요건의 합리적 완화
 - 개인CB의 하나로, 통신료·전기·가스·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'비금융정보 전문CB'이 신설
 -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'개인 사업 자CB'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
-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에 따라 데이터 분석· 가공,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·부수 업무 가능
-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신설, 개인CB·개인사업자
 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

	인가단위		최소 자본금	금융회사 출자요건
현행	신용조회업(CB업 구분X)		50억원	적용(50% 이상)
개선	개인CB		50억원	적용(50% 이상)
		1 비금융전문C B	5억원/20억원*	배제
	❷개인사업자CB		50억원	적용(50% 이상)
	기업 CB	기업등급제공	20억원	적용(50% 이상)
		기술신용평가	20억원	적용(50% 이상)
		정보조회업	5억원	배제

^{* (5}억원) 비정형 데이터 (20억원) 대량의 정형 데이터

금융분야 마이데이터

-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
-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, 신용·자산관리 등 서 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(MyData) 산업 도입
-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·보안체계 마련

본인신용정보관리업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9의2. "본인신용정보관리업"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제1호의3가목1)·2)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나.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다.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라.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마.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의3. "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본인신용정보관리업

- 최소 자본금은 5억원, 금융회사 출자요건 없음
-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, 맞춤형 상품 추천, 금융상품 자문 등 가능
-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업무, 투자자문·일임업, 금융상품자문업 등의 수행도 가능

본인신용정보관리업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9의2. "본인신용정보관리업"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- 가. 제1호의3가목1)·2)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나.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다.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라.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
- 마.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의3. "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"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
본인신용정보관리업 - 데이터 전송

- 제22조의9(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) ④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등의 규모,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.
- ⑥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 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·방법,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본인신용정보관리업 - 허가

제4조(신용정보업 등의 허가)

- ② 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야 한다.
- 제6조(허가의 요건) ① 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1의3.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
- 가. 기업정보조회업무: 5억원
- 나.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: 20억원
- 다. 기술신용평가업무: 20억원
- 1의4.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: 5억원 이상

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

- ㅇ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
-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, 정보활용등급제*도입 등 소비자가 "알고하 는 동의 관행" 정착
- *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,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'정보활용 동의등급' 산정·제공
- 기계화·자동화된 데이터 처리(Profiling)*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·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
- * 예 : 통계모형·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,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

동의

- 제34조의2(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)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, 제32조제1항·제2항, 제33조제1항제2호,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(이하 "정보활용 동의"라 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)를 받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제2항,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사항(이하 이 조에서 "고지사항"이라 한다)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동의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 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1.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
- 2.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 되도록 할 것

•••

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

- 제36조의2(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)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(이하 이 조에서 "개인신용평가회사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1.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
- 가. 개인신용평가
-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, 내용의 결정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 보제공·이용자에 한정한다)
- 다.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2.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

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

- 2.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
- 가. 자동화평가의 결과
- 나.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
- 다.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(이하 이 조에서 "기초정보"라 한다)의 개요
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- 1.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
- 2.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

제36조의2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
- 1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2.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
-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,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

- 제36조의2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- 1.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
- 2.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- 가.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나.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- 1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쟁 점

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인가?

- 개정법 해석상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
 : 제2조 제1호 "개인정보" 정의 내에서 "가명정보" 규정
-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정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
-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

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

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인가?

- 개정법 해석상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
 : 제2조 제1호 "개인정보" 정의 내에서 "가명정보" 규정
-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정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
-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

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.

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인가?

인간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이다.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·수집·보관·처리·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(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다 49933 판결,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).

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(적용범위) 가명정보는 제20조, 제21조, 제27조, 제34조제1항,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, 제39조의3, 제39조의4,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- 1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4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, 처리정지의 거절,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른 법과의 관계

처벌규정의 '목적범' 규정

개정법 제7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〈개정 2016. 3. 29., 2020. 2. 4.〉

4의3.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

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불균형

- 마이데이터 등 관련 규정
- 상업적 활용 등 규정

결론

- 가명정보의 활용
- 묵시적 동의 가능
- 정보이동의 용이성 증대

미래

- 데이터 활용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
-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익의 향유 주체에 대한 고민
- 데이터 공유, 공익 데이터에 대한 논의

감사합니다.

본 자료는 나눔바른고딕 폰트로 작성되었습니다.